

18 (第108回-第5次)

안 제4조제2항 단서중 “시장은”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시장은 공동주관신문사와 협의하여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

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,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안 제10조 중 “시장이”를 “서울특별시와 공동주 관신문사가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장은”을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“서울특별시와 공동주관신 문사는”으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,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되,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
안 제10조 중 “시장과 공동주관신문사”를 “서울 특별시와 공동주관신문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	관련	발의년월일 : 1998.7.16
번호	13	발의자 : 최충민의원 외 13명

1. 수정이유

○ 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·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시의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13조제1항)

○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.(안 제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○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조치 없음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20인”을 “21인”으로 하고,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	관련	제안년월일 : 1998.7.15
번호	13	제안자 : 정현균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<p>○ 시정개혁위원회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·인사제도 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.</p> <p>2. 주요골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안 제13조제1항) ○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. (안 제3조제2항) <p>3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조치 : 별도 필요조치 없음. <p>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아 수정한다. 안 제3조제1항중 "20인"을 "21인"으로 하고,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.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	<p>4.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5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 3 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</p> <p>제 4 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5 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.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 <p>제 6 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 7 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</p>
---	---

<p>는 관련기관·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.</p> <p>제9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3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출일자 : 1998.7.11</td></tr> <tr> <td></td><td>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</td></tr> </table> <p>1.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조직·인사제도등 시정운영의 틀을 개혁함에 있어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</p> <p>2. 주요골자 가. 위원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함.(안 제2조) (1) 시정의 개혁 방향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(2)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(3) 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(4)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 <p>나. 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 (1) 위원수 : 위원장 2인 포함 20명 이내 (2) 위원장 : 행정(1)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</p>	의안 번호	13	제출일자 : 1998.7.11			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	<p>민간위원 공동수행</p> <p>(3) 위원 :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</p> <p>다. 실무위원회(안 제5조)</p> <p>(1) 구성 : 위원장 2인 포함, 15명 이내의 위원</p> <p>(2) 위원장 : 본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</p> <p>(3) 위원 :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</p> <p>(4) 기능</p> <p>(가)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등 개혁방안 구체화</p> <p>(나)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</p> <p>(다)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</p> <p>라. 의견청취등(안 제6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,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 <p>마. 간사(안 제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둠. <p>바. 수당등(안 제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<p>3. 참고사항</p> <p>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※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견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회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나. 예산조치 :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등 기정 예산 활용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 개혁에 관한 서</p>
의안 번호	13	제출일자 : 1998.7.11					
		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					

<p>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정의 개혁 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2.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3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4.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5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<p>제 3 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(1)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, 위원은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 <p>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</p> <p>제 4 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제 5 조(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</p> <p>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·조정 등 개혁방안 구체화 2.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	<p>3.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검토</p> <p>제 6 조(의견청취 등)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시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제 7 조(조사·연구의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·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제 8 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.</p> <p>제 9 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,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10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도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5조제2항 중 "사용량을 호수로"를 "사용량을 호수(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)로"로 하고, 같은조제6항 중 "이를 절상"을 "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(둘째자리 이하는 절사)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.</p>
---	--